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-4호

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3월 12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- 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2. 제안이유
 - O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겸직 신고, 영리거래 금지,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지방의회 신뢰 제고
- 3. 주요내용
 - O 겸직신고 관련
 - 신고기간 확보를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신고, 관련 서식 활용
 -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사임권고 실시
 -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파악
 - 미신고, 허위 등 부정확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

O 수의계약체결 관련

-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명확화
-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서식을 설정하여 정확한 정보 취득

○ 징계 기준 설정

- 겸직신고,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
- 징계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

4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35조, 제36조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

5. 공고기간

- O 공고기간: 2019. 3. 12. ~ 2019. 3. 18.(7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- 6. 조례안 : 붙임

7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 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O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O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조(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) ① 의원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 지 3호 서식에 따르며,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.
- 제8조(관리인 등 겸직 금지)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 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.

-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・출연(재출자・재출연을 포함한다)한 기관・단체
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· 단체
- 3.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,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
-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·직원을 말한다.
-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9조(징계 등)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.
 - 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2. 겸직을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
 - 3.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4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
 - 5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
 - 6.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

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

- **제1조(목적)**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윤리강령) 장성군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은 군민의 대표로 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- 1.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,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.
 - 2.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 - 3.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,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.
 - 4.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 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.
 - 5.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·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.
- **제3조(윤리실천규범)**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- 1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2.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,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3.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- 4. 강연,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 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5.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 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,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서는 아니 되다.
- 6.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7.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**제4조(윤리심사 등)**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.
 -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으로 정한다.
- 제5조(겸직신고)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- **제6조(영리행위의 제한)** 의원은「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
- **제7조(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)** ① 의원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

-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,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.
- 제8조(관리인 등 겸직 금지)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.
 -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・출연(재출자・재출연을 포함한다)한 기관・단체
 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
 - 3.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,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
 -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임 · 직원을 말한다.
 -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9조(징계 등)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.
 - 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2. 겸직을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
 - 3.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4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
 - 5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
 - 6.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

<별표>

겸직(변경) 신고관련 징계기준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	적용기준
1. 겸직신고 위반	○ 겸직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○ 겸직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○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(법 제36조제2항 위반)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2. 영리거래 금지	○ 영리거래금지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(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)	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시항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○ 계약체결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○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
<별지 제1호 서식>

연변	<u> </u>	겸직 내용이 다수	인 경우	개별 건	<u></u> 으로	작성 후	연번 부여				
	장성군의회 의원 겸직(변경)신고서										
	소속정당		선 거	지 역	구						
성	한 글		구 비례대표 분								
명	한 자	생년월일									
	기관·단체명										
	직 위		기긴	<u> </u>			~				
	수행업무내역										
7 4	분 야	농수산 □, 상공업 □, 7	번설업 □,	서비스업] _, ī	1육 □, 전	문직 🗆, 기타 🗆				
겸 직	영리성 여부		영리 [□, 비영	리						
내	보수수령 여부	보.	수수령 [], 보수	미수령] 🗆					
용	الدائمة المائمة	근로소득					원				
	보수 수령액 (연간)	근로소득 이외 소득					원				
	(– – /	계					원				
	주 소				전화	번호					
		조제3항 및 장성군의 5조의 규정에 따라 9									
		년	월	일							
		장성군의회 의원			(ઌ <u>઼</u>])					
					장식	성군의호	의장 귀하				

	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									
	소속정당		선 거	지 역 구						
성	한 글		구 분	비례대표						
명	한 자		Ą	J년월일						

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 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장성군의회 의원 (인)

장성군의회 의장 귀하

<별지 제3호 서식>

장성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(변경) 신고서 생년월일 성 명 총 명 수의 계 본인 관련자 명 본인, 직계존·비속 약체결 제한 배우자, 배우자 직계존·비속 유 배우자 관련자 관련자 무 사업자명 사업자 사업장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지분율 기타 벥 (상호, 법인명) 등록번호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

- ※ 관계는 본인, 배우자, 본인직계존·비속, 배우자직계존·비속으로 구분
- ※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, **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'해당** 사항 없음'으로 기재
- ※ '기타'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
- ※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·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장성군의회 의원

(임)

장성군의회 의장 귀하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(겸직신고) ① 의원이「지방자 제5조(겸직신고) ① 의원은 당선 전 치법 |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 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 임 후 15일 이내에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.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(2)·(3) (현행과 같음)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 <신 설> 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제36조제2 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제7조(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) <신 설> ① 의원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제3 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 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

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,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 다.

<신 설>

- 제8조(관리인 등 겸직 금지) ① 의원은 하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될 수 없다.
 -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 연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한 기관·단체
 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·단체
 3.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
 비,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·단체
 -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 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·직원을 말한다.
 -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 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

<신 설>

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- 제9조(징계 등)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.
 - 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2. 겸직을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 법」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 시한 사임권고를 거부
 - 3.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 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4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
 - 5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
 - 6.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 임권고를 거부

별표(신설)

겸직(변경) 신고관련 징계기준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	적용기준
1. 겸직신고 위반	○ 겸직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O 겸직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○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(법 제26조제2항 위반)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2. 영리거래 금지	O 영리거래금지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(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)	○ 수외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O 계약체결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	 관리인 경직 사임권고 불이행 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
별지 제1호 서식

별지 제1호 서식(개정)

-	속정당			선 거	지역구	
100	한 글			_ 거 구 분	비례대표	
H	한 자			생	년 월 일	
	기관. 단체명			14.		
1	직 위			재	직기간	
3	보수	(택일) 연 월	원 원	전	화번호	
	주 소					
٢٨	방자치법」제	세35조제3항의	규정에 따라 : 년 원		겸직을 신고합	니다.
			장	성군의회	의원	(인)

연변	d	결칙 내용이 다수	인 경우	· 개별 건으	로 작성 후	연번 부여
	장성	성군의회 의원	겸 2	막(변경)신고/	બ
	소속청당		선 거	지역	7	
성명	한글		구 분	비례대최	Ē.	
18	한 자		14	생년월일		
	기관·단체명	7.			77	
경 직 대 용	직 위		기	1		(#.)
	수행업무내역					
	분야	농수산 🗆 상공업 🗅 र	1설업 🗆	, 서비스업 [그, 巫육 口 冬	1문칙 □, 기타 □
	영리성 여부		영리	🗆, 비영리		
	보수수령 여부	耳。	수수령	0, 보수 🖫	수령 ㅁ	
		근로소득				원
	보수 수령액 (연간)	근로소득 이외 소득				원
	(4.4/	7 4)				원
	주 소				천화 번호	
	방자치법 제35	조제3항 및 장성군의 5조의 규정에 따라 9		원의 &i	리강령 및	
		પ ્ વ	월	일		
		장성군의회 의원			(인)	
					21 11 7 A15	회 의장 귀하

별지 제2호 서식(신설)

	소속청당			선 거	지 역	구
성	한 글			7	मोस्रोट	H.正.
명	한 자				병년월일	
			년	욒	일	
		장성군	년 의회 의원	월	일	(현)

별지 제3호 서식(신설)

성	명					생년월일				
仝	의계	á	<u> </u>	명		10	AP.			
익	체결	본인 관련자		본인 관련자 명		본인, 집계존 비속 명				
제한 관련자		배우자 관련자 명		*	배우자, 배우자 침계존 비속 명					
		구 .								
연 번	관계	성 및	병	생년월일	사업자명 (상호, 법인명)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사업창 소재지	지분율	기타
1										
2				1			,			
3						-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, ,		1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- :		1	

- * 편계는 본인, 배우자, 분인칙계준 비속, 배우자칙계준 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물 모두 기재하되,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'해당 사항 없음'으로 기재 * '기타'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체2항 각호 사유물 입력 *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·제33조의2 및 합평군의회 의 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

장성군의회 의원 (인)

장성군의회 의장 귀하